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2
----------	-----

2024. 3.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4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가. 제안사유

- 현재 조례 내용상 표창금지 규정 외에 다른 종류의 포상을 금지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이 없음.
-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을 제한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메꾸고 포상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표창금지 조문의 적용 대상을 상장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 대상 전체로 확대함(안 제12조 제목, 제6호 단서 및 제8호)

- 형사사건 관련 포상금지 대상자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12조제7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현행 충청북도 포상조례상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제4조)인데, 포상 금지 또는 제외 사유 관련 조문인 제12조(표창금지)는 표창대상자에 한하고 있어 표창 외 다른 포상자에 대한 포상제외(포상금지)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법률 조문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안 제12조의 제목을 표창금지→포상금지로 바꾸고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포상의 종류 중 각종 대회나 교육과정에서 거둔 성적을 원인으로 한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수여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과정이 다른 포상과는 종류가 다르므로 포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발전 등의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 시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자 제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⁶⁾.
- 신설된 안 제12조제7호는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과 일반도민에 대해서도 포상의 신뢰성 및 영예성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포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6) 매일신문(2023. 8. 17.), “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436건 개선 권고” 보도자료 내용 참고

- 안 제12조제7호는 현행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하여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아닌 일반인의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각각 포상이 제한되도록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포상의 공신력과 품격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표창금지)”를 “(포상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창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6호 단서 중 “표창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표창계획에 표창금지”를 “포상계획에 포상금지”로 한다.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u>표창금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u>표창대상자</u> 로 선발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u>표창대상자</u> 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u>표창계획</u> 에 <u>표창금지</u>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12조(<u>포상금지</u>) ----- ----- - <u>포상대상자</u> -----. <u>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포상대상자</u> ----- ----.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 <u>포상계획</u> 에 <u>포상금지</u>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부 표창⁷⁾ 규정

7) 해당 규정에서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인 '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으로 구분됨.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